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p>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납세자보호관”이란 「관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각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도·감독한다.</p> <p>4.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관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의2에 따라 각</p>	<p>제2조(정의) ①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이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의2----- ----- -----.</p> <p>4. -----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p>	<p>· ‘법’ 표현에 대한 정의</p> <p>· ‘영’ 표현에 대한 정의</p>

본부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8. (생략)

9.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
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관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를 시정하
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정명령”이란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
자보호관이 하급관서 국장·과
장 및 권역내세관장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관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한다) 제144조의2-----

5. ~ 8. (현행과 같음)

9. -----

법-----
-----.

10. -----

법-----

절차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11.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관세법」 및 수출입 관련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4조(기한)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통지, 반환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신설>

-----.

11. (현행과 같음)

② -----
----- 법 -----

-----.

제4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훈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이 훈령에 따른 기한의 계산

· 기간 및 기한 계산 기준 규정

· 행정규칙 입안기준에 따라 상위법

제5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관의 설치) ①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의2
에 따라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
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 직위
납세자보호관을 1명을 둔다.

② 법 제118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44조의2에 따라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에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각 1명을 둔다.

③ (생략)

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 제8조를 따른다.

제5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관의 설치) ① 법 제118조의
2-----

-----.

② 법 제118조의2 및 영 제144조
의2에 따라 인천공항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대구본부세관 및
광주본부세관(이하 “본부세관”이
라 한다)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 1명을 둔다.

③ (현행과 같음)

준용

· 기존 제5조제1항 ‘법’ 표현에 대
한 정의 개정 제2조제1항제3호
로 이동

· 정식 기관명칭 사용

제7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관할)

① (생략)

② 인천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평택세관을 포함하여 관할한다.

③ (생략)

제11조(구성)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 제118조의4제5항, 제6항 및 영 제144조의3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위촉 배제 및 해촉) ①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

제7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천본부세관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

-. <후단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① 관세청장은 영 제144조의3제2항 제2호다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 정식 기관명칭 사용

· 후단의 위원 위촉 내용 제12조 제4항으로 이동

· 위원 위촉절차 구체화

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을 위촉할 때에 영 제144조의3제
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촉할 수 없다.

<신 설>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영 제144
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서 정한
기관에 위촉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요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4조의3제6항에서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
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
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
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2.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을

· 상위법의 위임사항 규정

②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영 제144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세사법」 제2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⑧ -----
-----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제7항 -----
것을 확인한 경우-----
다만 제7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 일부 해촉사유 기속행위로 규정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4.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삭 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삭 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 기존 제11조제1항 후단 내용

④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 중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⑦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연
-----.

이 경우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자가진단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144조의3제6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점검한다.

- 위원 점검 연 1회로 단축
- 민간위원의 자가진단 점검 방식 도입
- 위원의 해촉사유 상위법 준용

<신 설>

<신 설>

⑤ (생 략)

<신 설>

제13조(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 및 위원이 영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납세

2. 영 제144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4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원장 및 위원이 영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

· 기존 제13제4항→개정 제12조제6항

· 제척·회피 세부절차 마련 및 서식 명칭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제척·회피) 사전진단서에 따라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에 참석을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회피 사전진단서를 함께 배포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회피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의 전날까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이 영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 서식 명칭 변경

· 조문 표현 정비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법 제1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는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민원인 또는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개별정보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납세자

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을 심의할 때에 참석을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⑤ -----

----- .
----- 개별
정보 내용-----
-----.

⑥ -----
----- 제
12조제6항-----

· 띄어쓰기

· 준용 조문 명시

· 문구 표현 정비

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에 따라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생략)

제4장 고충민원

제1절 통칙

제15조(고충민원의 대상) (생략)

<신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5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 하결정 또는 법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 불복청구

----- 대행한다.

· 기존 제15조 및 제16조 통합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에 따른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판결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관세청장, 본부세관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밀수신고

5.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법 제312조·제316조·제318조에 따른 고발

6. 이 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삭 제>

제16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개정 15조로 이동

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또는 법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에 따른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판결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관세청장, 본부세관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밀수신고

5.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법 제312조·제316조·제318조에 따른 고발

6. 이 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

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
정할 수 없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해
야 한다.

제17조(대리인) ① 민원인은 변호
사 또는 관세사를 고충민원의 대
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
또는 징수관련 체납세액 합계액
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
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

제17조(대리인) ①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해서는 법 제126
조를 준용한다.

<삭 제>

· 대리인 선임 상위법 준용

· 상위법에 명시된 문구 삭제

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 뒷면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을 취하할 때에는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②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삭제>

제16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8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19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 서식 번호 변경

· 상위법에 명시된 문구 삭제

· 상위법에 명시된 문구 삭제

· 기간 및 기한 계산 기준 신설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관관서 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

14일 -----

② -----

따른 중복표현 제거

· 서식 번호 변경

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 통지서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 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 신청 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2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

----- 별지
제7호서식-----

-----.

제20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
----- 민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

----- 통지하여 종결하고,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 종결 절차 명확화

· 개정 제29조로 이동

청한 고충에 대한 세관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7조(처리 관할 및 이송) ① 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또는 세관관서가 속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관서장에게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제21조(처리 관할 및 이송) ① ---
 ----- 하
여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여야 -----

- 기존 제2절의 제27조→개정 제1절 통칙의 제21조
- 조문 표현 정비

- 조문 표현 정비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이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관서
로 이송하고, 관할 세관관서로 이
송하였음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3조 · 제24조 (생략)

제2절 고충민원의 처리절차

<신설>

제22조 · 제23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제2절 고충민원의 접수 및 확인

제24조(고충민원의 신청절차)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고충민원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
편,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제
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 업무절차에 맞춰 절 제목 변경
- 신청 절차 명확화
- 기존 제25조제1항 및 제2항→개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접수) ① 고충민원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른다.

②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개

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제25조(접수) ① 세관공무원은 제2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고충민원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부여된 접수번호(사건번호)를 민원인에게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삭 제>

- 접수 절차 명확화
- 기존 제25조제3항→개정 제25조 제1항

- 개정 제24조제2항으로 이동

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세관공무원은 민원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권역내세관장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관관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친절하게 응대하고 고충내용을 경청해야 한다.

⑤ (생략)

제26조(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①·② (생략)

<삭 제>

② -----

----- 고충민원 신청인-----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6조(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①·② (현행과 같음)

· 개정 제25조제1항으로 이동

· 조문 표현 정비

③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검토한 결과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관세법」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에 규정된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④ 민원인이 제3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을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47호서식의 납세자보호제도 이용 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⑥ (생략)

⑦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이관

③ -----

④ -----

별지 제8호서식-----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조문 표현 정비

· 서식 번호 변경

· 신청서 작성 의무화

받은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접수되었
음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
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
당관에게 이관된 고충민원의 처리
기한은 고충민원이 국민신문고시
스템에 최초 등록된 날로부터 기
산한다.

<신 설>

---- 통지하고 제24조에 따른 신
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⑧ -----

---- 제7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접수를 통지한 날-----
-----.

제28조(보정요구)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을 정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 처리기한의 기산일 변경

· 보정절차 신설

그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신청 취지가 요청서의 작성내용으로는 불분명한 경우
2. 신청서에 신청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작성된 신청 이유로서는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서에 고충민원 신청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4.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

는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20
일이내로 하며 보정기간은 제19
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처리 안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예정기
간, 처리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29조(처리 및 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① 소관부서장은 고충내용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

제27조(처리 안내) -----
----- 고충민원을
접수한 -----

-----.

제29조(신청의 취하 및 반려) ① 고
충민원 신청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관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
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 표현 정비

· 기존 제29조제1항 → 개정 제34조
제1항

· 기존 제22조 → 개정 제29조제1항

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1. 관세법령에 명백히 위배된 처
분

2. 훈령·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표준·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 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 준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취하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
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
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
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
민원 취하서를 제출받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 의사를

· 취하 절차 명확화

다만,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할 수 있다.

1. 관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빙서류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거나 관례, 관세심사·심판결정례, 예규 등으로 세관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확인한 때에는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고충민원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 기존 제16조제2항 이동 및 처리 절차 명확화

· 반려절차 신설

제30조(소관부서장에 대한 의견조 회)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 회서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고 충민원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 고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1. 고충민원 당사자가 아닌 사람 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 청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 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 정을 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소관부서장에 대한 의견조 회) ① -----

----- 별지 제11호서 식-----
- 고충민원 서류 -----

- 서식 번호 변경
- 띄어쓰기

부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
은 소관부서장은 고충내용을 충
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
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근거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
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고
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따
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회보해야 한다. 이 경
우 소관부서장은 해당 고충내용
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즉시 시정하고, 관련 서류를

-----.

② -----

----- 3
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 . <후단
삭제>

- 의견회보 기간 연장
- 서식 번호 변경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31조(다른 세관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세관관서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

제31조(다른 세관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① -----

----- 별지 제11호서식-----

-----.

② -----

-----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 서식 번호 변경

- 의견회보 기간 연장
- 서식 번호 변경
- ??????????

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해당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충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의견회보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32조(시정요구)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고충민원에 대해 직권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

----- .
- 경우 -----

-- 관련 증빙자료-----

----- .

<삭 제>

· 개정 제34조제2항으로 이동

· 개정 제34조제3항으로 이동

은 소관부서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사실 확인 및 처분자료 제출·열람) ①·② (생략)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처분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자료 열람·제출 요구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 또는 세관

제32조(사실 확인 및 처분자료 제출·열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13호서식-----

· 서식 번호 변경

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략)

제34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생략)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 세관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민원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서명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6호서식 -----

-----.

제3절 고충민원의 처리

· 서식 번호 변경

· 절 위치 변경 및 제목 변경

<신 설>

제34조(직권처리) ① 소관부서장은 제30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시정조치 관련 서류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

1. 관세법령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훈령·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표준·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 기존 제29조 및 제32조를 통합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절차를 하나의 조문에 통합

제시한 경우

5. 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 준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
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충민원 시
정요구서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
은 소관부서장은 요구를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

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
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
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
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
72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
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
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
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
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

빙서류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
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
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었음
이 명백하거나 판례, 관세심사
· 심판결정례, 납세자보호위원
회 의결례, 예규 등으로 세관관
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
되어 있는 경우

3. 소관부서장의 시정 등으로 고
충민원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
재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준하는 경우

<삭 제>

· 절 위치 변경 및 제목 변경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제35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 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결정사유를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전자우편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결과, 그 의결이 인용불가인 경우에는

제39조(처리결과 통지) ① -----
 ----- 제
34조 및 제37조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를 -----

 ----- 별지 제10호서
식-----

② (현행과 같음)

③ -----
 -----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인
용불가로 의결한 경우, 필요 시 -

· 처리절차 명확화 및 서식 번호 변경

· 인용불가에 대한 절차 개선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을 해야 한다.

④ (생략)

제36조 (생략)

제37조(심의자료의 작성·배부 및

사전열람)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소관부서장의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고

-----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5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준

비)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소관부서장의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심

· 서식 번호 변경

· 심의자료 배포시점 명확화
· 서식 번호 변경

충민원을 심의하기 전에 심의자료(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의자료”라 한다)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에 첨부하여 고충민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자료는 관세청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에 첨부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관세청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민원 신청인이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

· 기존 제5항을 제4항 후단으로 이동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하여 심의자료를 사전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전달하고, 소

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하여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사전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⑤ 고충민원 신청인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전달하

· 추가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명확화

· 추가 의견 제출 기한 연장 및 제출 어려울 시 조치방법 신설

관부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 또는 그 대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해야 한다.

제38조 (생략)

제39조(의결 등)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고, 소관부서장은 회의 개최일 전 날까지 추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인 및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해야 한다.

제36조 (현행 제38조와 같음)

제37조(의결 및 후속조치) ① -----

-.

· 표현 정비

· 조문 제목 정정

1.·2. (생략)

3. 인용불가의결: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용하지 아니하는 의결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결서에 작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고충민원 의결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신설>

1.·2. (현행과 같음)

3. -----
----- 때에 -----

② -----

---- 별지 제19호서식-----
----- . <후단 삭제>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고충민원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

· 서식 번호 변경
· 기존 제2항 후단 내용 제3항으로 이동

· 기존 제2항 후단 내용 명확화 및 서식 번호 변경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그 통보일부터 2일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0조(본부 세관장의 결정 요청)

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④ -----

 ----- 3일 -----

 ----- 별지 제21호서식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8조(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 심의 결과 후속조치 기간 연장
- 서식 번호 변경

- 조문 제목 정정

① 소관 부서장은 제39조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충민원 결정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장 관세조사 관리

제1절 관세조사 범위 확대

의결 불수용 시 처리절차) ① --
----- 제37조-----

----- 별
지 제22호서식-----

-----.

② -----

----- 별
지 제23호서식-----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서식 번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제41조(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의 범
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
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
사기간 종료 3일(첫날은 산입하
되,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신
청해야 한다.

1. ~ 3. (생략)

제43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관세조
사 범위 확대 심의) ① 납세자보
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제41조(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 -

----- 별
지 제24호서식-----

3일전-----

-----.

1. ~ 3. (현행과 같음)

제43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관세조
사 범위 확대 심의) ① -----

- 서식 번호 변경
- 기간 및 기한 계산 중복표현 삭제

- 서식 번호 변경

서 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② (생략)

제44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의결) ① (생략)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서에 의결내용을 작성한다.

1. ~ 3. (생략)

<신설>

----- 별지 제25호서식-----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26호서식-----
-----.

1. ~ 3. (현행과 같음)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

· 서식 번호 변경

· 의결 후 처리절차 신설

제45조(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
 보) ① 제42조에 따라 관세조사
 범위 확대를 승인한 때에는 승인
 한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이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
 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를 소관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관
 부서장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
 한 훈령」 별지 제20호서식의 관
 세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
 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승
 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

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
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
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
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45조(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
 보) ① -----

 - 별지 제27호서식-----

· 서식 번호 변경

세척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그 내용을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에 따라 관세조사 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③ 제42조에 따라 관세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

② ----- 별지 제27호서식

-----.

③ -----

----- 별지 제27호서식 -----

· 서식 번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통보해야 한다.

제46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① (생략)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예정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통지(통보)서에 의하여 관세조사 기간 종료일부터 회의개최 예정일까지 관세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납세자가 관할 세관관서 장으로부터 법 제118조의5제2항

-----.

제46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28호서식-----

· 서식 번호 변경

에 따른 결정 통지를 받고 관세청장에게 관할 세관관서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통지(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④ (생략)

제2절 장부 등의 보관기관 연장
제47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 ① 소관부서장이 법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

-----.

③ ----- 별지 제28호서식

-----.

④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47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 ① -----

-----.

· 서식 번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재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관련서
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
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
에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생략)

제49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의) ① 납
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
원회에서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
장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별
지 제27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
간 연장 심의자료를 작성해야 한
다.

별지 제29호서식-----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의) ① --

별지 제30호서식-----

-----.

·서식 번호 변경

② (생략)

제50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의결) ① (생략)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의결내용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에 작성한다.

1. 2.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의결내용을 별지 제31호서식-----
-----.

1. 2. (현행과 같음)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 회의록 작성 의무화
- 서식 번호 변경

- 의결 후 처리절차 신설

제51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0조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보관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1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

----- 별지 제32호서식 -----

② -----

----- 14일 -----

· 서식 번호 변경

· 기간 및 기한 계산 중복표현 삭제

하고,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③ (생략)

제6장 권리보호요청

제1절 통칙

제53조(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고충민원은 납세자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경정·고지취소·압류해제 등 세관관서장의 후속 처분이 필요한 민원을 의미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하게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이 장에 따른 권리

-----.

③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53조(고충민원의 권리보호요청)

세관관서장의 후속처분이 필요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 제목 및 조문 내용 정정

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54조(요청 대상) ① 관세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일반 관세행정 분야에서 권리보호요청은 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

제54조(요청 대상) ① -----

--- 권리보호요청-----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붙여쓰기

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 9. (생략)

<신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④ 제55조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인이 사실관계 변동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권리보호요청

-----.

1. ~ 9. (현행과 같음)

10.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11. ----- 제10호 -----

<삭제>

· 과태료 관련 일반행정 권리보호 요청 대상 추가

· 제10호 추가

· 개정 제59조제1항으로 이동

을 신청한 경우, 2회 신청 분부터
는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경우는 제
외한다.

<신 설>

제55조(권리보호요청 방법) ① 납
세자 또는 그 대리인(법 제126조
제1항을 준용하며, 이하 납세자

제55조(권리보호요청의 대리인) ①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해
서는 법 제126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을 선임 할 때에는 별
지 제3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
회 심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34
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서 뒷면
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
다.

제56조(권리보호요청 방법) ① ---
-----(이하 -----

· 대리인 위임의 세부절차 신설

· 조문 표현 정비

또는 대리인을 “권리보호요청인”이라 한다)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라 요청해야 하며, 제54조제3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서에 따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서 하단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삭 제>

· 개정 제64조제2항으로 이동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의 권리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48호서식의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통지서에 기재하여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신 설>

② -----

-----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58호서식의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통지서에 기재하여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57조(권리보호의 요청기간) 권리보호요청인은 해당 처분과 관련

· 서식 번호 변경

· 개정 제57조로 이동

· 기존 제55조제4항 및 기존 제89조 통합

된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
기 6개월 전까지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와 관련
된 권리보호요청은 「관세법 등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56조(처리 관할 및 이송) ① (생
략)

②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와 처리 관할이 아
닌 권리보호요청의 이송은 각각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
다.

제57조 (생략)

제58조(전산 입력) 납세자보호관

제60조(처리 관할 및 이송) ① (현
행과 같음)

② -----

제21조제2항 -----.

제61조 (현행 제57조와 같음)

제5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한)

· 준용 조문 변경

· 기존 제58조→개정 제65조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요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4조제3항과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 기존 제62조→개정 제58조제1항

· 기존 제82조→개정 제58조제2항
· 유형별 권리보호요청 처리기한 통일(20일)

· 기존 제90조→개정 제58조제3항

<신 설>

담당관은 「관세법 등에 따른 과
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된 권리보호
요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59조(반복 및 중복 권리보호요청
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
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인이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
을 사실관계 변동 등 정당한 사
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
한 경우에는 2회 신청분에 대해
서는 처리가 제외됨을 별지 제35

· 유형별 권리보호요청 처리기한
통일(20일)

· 기존 제54조제4항→개정 제59조
제1항

· 반복 및 중복되는 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 명확화

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로 통지하여 종결하고, 3회 신청 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다시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회 이상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앞서 요청한 권리보호와 확연히 구분되고 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앞선 주장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요청한 권리보호로 본다.

· 반복 및 중복 요청의 예외사유 신설

<p>제59조 (생략) 제2절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p> <p><신설></p> <p><신설></p> <p>제60조(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인은 제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침해</p>	<p>③ <u>권리보호요청인이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2개 이상의 세관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u></p> <p>제62조 (현행 제59조와 같음) <삭제></p> <p>제2절 관세조사 관련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p> <p>제1관 권리보호 요청의 접수 및 확인</p> <p>제64조(권리보호요청 절차) ① 권 리보호요청인은 제54조제1항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 및 중복 요청의 처리절차 명확화 · 관세조사 권리보호 요청 ‘절’ 신설 · 업무절차에 맞춰 ‘관’ 구성 · 심의 요청서 제출방법 명확화 · 서식 번호 변경
--	--	---

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라 관세조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서에 따라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이 권리보호요청을 취하한 경우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조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요청인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서 뒷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 기존 제60조제2항→개정 제67조 제2항
- 기존 제55조제2항→개정 제64조 제2항

를 생략할 수 있다.

제61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
할) 권리보호요청은 관할 본부세
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다.

제62조(처리기한) 납세자보호담당
관은 권리보호요청의 사실관계
확인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
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3조(내용 파악 및 처리방향 결
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
30호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서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권리

동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보호 요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보정요구, 시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심의 제외 등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처리한다.

<신 설>

제65조(접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4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인 인적사항, 요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부여된 접수번호(사건번호)를 민원인에게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

·기존 제58조→개정 제65조

제64조(보정요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보정기간은 제62조에 따른 처리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신설>

해야 한다.

제66조(보정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20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
제58조제1항-----
-----.

제67조(신청의 취하 및 반려) ① 권

리보호요청인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세관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권리보호 요

· 처리기한 명확화

· 취하 근거 신설

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를 제출받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 의사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4조에 따라 제출된 권리보호요청이 제54조제1항의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

· 기존 제60조제2항→개정 제67조 제2항

·반려 절차 신설

3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처음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5조(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법 제18조의5제6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제69조(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

① -----

----- 별지 제39호서식-----

----- . 다

· 서식 번호 변경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권리보호요청인이 관할 본부세관장으로부터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정 통지를 받고 관세청장에게 관할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일시중지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보호 심

만, 납세자가 일시중지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보호 심의 요청 내용이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영 제144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단서 삭제>

· 기존 제2항을 개정 제1항 후단으로 이동

의 요청 내용이 관세조사를 기피 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영 제144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6조(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권리보호요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① 제64조-----

----- 별지 제40호서식-----

-----.

- 조문 번호 및 준용 조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1. ~ 3. (생략)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를 할 때에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조 회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를 일시중지 하는 경우 제65조에 따른 관세조 사 일시중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67조(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 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별지 제34호서식의 권리보호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일시중지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69조-----

-----.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① -----

- 별지 제37호서식-----

▪ 일시중지 절차 개선

· 조문 번호 변경

· 조문 번호 및 서식 번호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에 따라 해당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의견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은 관련 자료 등을 별지 제35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따라 즉시 회신해야 하며,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할 수 있다.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38호서식 -----
----- 3일 -----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 서식 번호 변경
- 의견회보 기간 연장
- 기존 제2항 후단은 개정 제71조 제1항으로 이동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이 시정 조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보호 심의요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8조(시정요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세관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 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관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삭 제>

· 기존 제67조제3항→개정 제71조 제2항

· 후속조치 절차 명확화

· 업무절차에 맞춰 ‘관’ 구성

· 개정 제71조제3항으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보호심의요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9조 (생략)

<신설>

제73조 (현행 제69조와 같음)

제74조(의결 및 결정) ①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안건 설명, 권리보호요청인 또는 소관부서장의

· 개정 제71조제4항으로 이동

· 개정 제71조제5항으로 이동

· 기존 제70조제8항→개정 제74조 제1항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따라 의결한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시정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시정한다는 결정

2. 일부시정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일부 시정한다는 결정

3. 시정불가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기존 제71조제1항→개정 제74조 제2항

<신 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에 작성한다.

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5조(결과통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기존 제70조제9항→개정 제74조 제3항

· 의결 후속절차 명확화

· 기존 제71조제3항→개정 제75조 제1항

· 서식 번호 변경

제70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개최일 3일 전(첫날은 산입한다)까지 통지하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8조제1항의 기간까지 심의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못한 때에는 권리보호요청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72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준비) ① -----
 -- 별지 제43호서식-----
 ----- 납세자보호위원장에게 -----

 -----.

② -----

전까지 통지하고, 권리보호요청

- 기존 제72조→개정 제75조제2항
- 준용 조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 심의 요구 대상 명확화

- 기간 및 기한계산 중복표현 삭제
- 심의 시 배부자료 명확화

여야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이하 ‘심의자료’라 한다)를 배부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 비밀유지가 필요한 조사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에 첨부하여 권리보호요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내용, 소관부서장 의견, 사실관계 조사내용, 심리의견 또는 판단,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선결정례 등이 포함된 심의자료를 작성하
연 ---.

③ -----

----- “사전열람
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
44호서식-----

· 서식 번호 변경

해당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전열람용심의자료의 송부 및 열람방법은 제3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⑤ 권리보호요청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첫날은 산입한다)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⑦ (생략)

⑧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안건 설명, 권리보호요청인 또는 소

-----.

④ 사전열람용 심의자료-----
----- 제35조제4항-----
-----.

⑤ -----

----- 전-----

-----.

⑥·⑦ (현행과 같음)

<삭제>

· 띄어쓰기 및 준용 조문 변경

· 기간 및 기한 계산 중복표현 삭제

· 개정 제74조제1항으로 이동

관부서장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따라 의결한다.

⑨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의결보고서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소관부서장에게 통지한다.

제71조(결정 및 통지)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시정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시정한다는 결정
2. 일부시정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일

<삭 제>

제71조(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 ①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은 제68조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제6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 개정 제74조제3항으로 이동

- 기존 제71조제1항→개정 제74조제2항
- 기존 제67조제2항→개정 제71조제1항

부 시정한다는 결정

3. 시정불가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신 설>

②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요청을 심의제외하는 결
정(이하 “심의제외결정”이라 한
다)을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
(자료요청) 회보서에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
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 별지 제16호서식
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이하 “심의제외결정”이

· 기존 제67조제3항→개정 제71조
제2항

· 서식 번호 변경

· 기존 제71조제2항→개정 제71조
제6항

· 서식 번호 변경

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64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③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 제118조의5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36호서식의 권리보호 심의요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한다)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결정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66조-----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제5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준용 조문 변경

· 기존 제71조제3항→개정 제75조 제1항

· 기존 제68조제1항→개정 제71조 제3항

· 서식 번호 변경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2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2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 기존 제68조제2항→개정 제71조 제3항
- 서식 번호 변경
- 시정요구 결정기간 연장
- 시정요구 불수용 시 처리절차 명확화

<신 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

- 기존 제68조제3항→개정 제71조 제5항
- 서식 번호 변경

제72조(지연 통지) 납세자보호담당관
은 법 제118조의5제2항의 기간
까지 심의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
지하지 못한 때에는 권리보호요
청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
해야 한다.

제73조 (생 략)

제74조(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
청인에게 제71조에 따른 본부세
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그 결정
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
다.

<삭 제>

제76조 (현행 제73조와 같음)

제77조(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

----- 제75조제1항-----

-----.

· 기존 제72조→개정 제75조제2항

· 준용 조문 변경

제75조(사후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5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권리침해 사실확인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사후처리) ① -----

--- 세관공무원의 행위가 제5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에게 문서로 -----
--.

② -----
-----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은 -----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

- 서식 번호 변경
- 사후처리 통보 대상 추가

- 사후처리 통보 대상 추가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제5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정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명령을 요청해야 한다.

③ -----

-----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청 결과 통지서를 통지할 때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조사팀 교체 신청서를 함께 통지하여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당초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조사팀 교체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사팀 교체 신청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기존 제76조 제1항→제78조제3항
- 서식 번호 변경

제76조(조사팀 교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5조제3항에 따라 조사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조사팀 교체 신청서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와 같이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당초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조사팀 교체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사팀 교체 신청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조사팀 교체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1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에 따라 관

제79조(조사팀 교체) <삭 제>

① ----- 제78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 별지 제49호서식 -----

· 기존 제76조 제1항→제78조제3항

- 조사팀 교체절차 개선
- 서식 번호 변경

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70조제8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통지를 할 때 조사팀 교체 신청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요청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통보한다. 다만, 조사팀 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를 통보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 제78조제3
항----- 제74조제4
항-----

-----.

② ----- 제1항-----

----- 별지 제50호서식-----

----- 별지 제5
1호서식-----
-----.

③ ----- 제2항-----

- 서식 번호 변경
- 준용 조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의한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
게 시정명령서 또는 불승인 사실
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통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
은 소관부서장은 조사팀을 교체
해야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구성
원 전체 교체가 곤란할 경우 위
법·부당한 행위를 초래한 조사
공무원만 교체할 수 있다.

제3절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제77조(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인은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본부세관

----- 별지
제52호서식의 조사팀 -----
----- 통지서-----.

④ 제3항-----

<삭 제>

제80조(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통지

· 준용 조문 변경

· 준용 조문 변경

· 조문 제목 변경

· 준용 조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관세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0호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가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관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세관관서장은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후단 신설>

를 받-----

-----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

-----.

② -----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

-----.

의 경우 최초 세관관서에 접수된 날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 서식 번호 변경
- 기존 제3항 →개정 제2항 후단

③ 제2항의 경우 최초 세관관서에 접수된 날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78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62조, 제65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으로, '관할 세관관서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법 제118

③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68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으로, '관할 세관관서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법 제118조의5제2항은 법 제118조의5제4항으로 본다.

<삭 제>

- 기존 제3항 →개정 제2항 후단
- 기존 제78조 →개정 80조제3항
- 준용 조문 변경

- 기존 제78조 →개정 80조제3항

조의5제2항은 법 제118조의5제4항으로 본다.

제79조 (생략)

제4절 일반 관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신설>

<신설>

제80조(접수) 권리보호요청인은 일반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제5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관 공무원의 행위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5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할 세관관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81조 (현행 제79조와 같음)

<삭제>

제3절 일반 관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제1관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및 확인

제82조(권리보호요청 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인은 제54조제3항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4호 서식의 권리보호 요청서를 방문,

-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 ‘절’ 신설
- 업무절차에 맞춰 ‘관’ 구성
- 권리보호요청 절차 명확화

제54조제3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권리보호 요
청서에 따라 권리보호를 요청해
야 한다.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 권
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한 때에는 권리보호를 요
청한 것으로 본다.

② 권리보호요청인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서
뒷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
야 한다.

· 기존 제55조제2항 내용 반영

제81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4조제3항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관한 별지 제31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의 일시 중지, 보정요구, 시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심의제외 등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62조, 제64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삭 제>

제83조(접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82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인

· 권리보호 접수 절차 명확화

제82조(처리기한) ① 권리보호요청은 72시간(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상급 관서의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

인적사항, 요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부여된 접수번호(사건번호)를 민원인에게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삭 제>

한다)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 제54조제3항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구한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83조(집행 일시중지 요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집행의 불가피한 사유 등을

제87조(집행 일시중지 요청) ① --

----- 제86조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일시중지에 대한 의견조회 후 별지 제53호서식-----
----- . <단서 삭제>

· 기존 제82조제2항→개정 제58조 제2항

· 일시중지 절차 개선
· 서식 번호 변경
· 기존 제1항 후단→개정 제3항

회신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8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 ----- 납세자보호위원회 -----

----- 별지 제53호 서식 -----

-----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일시중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서식 번호 변경

· 기존 제1항 및 제3항 후단 통합

③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 기간은 제82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이 있거나 권리보호요청내용이 그 집행을 기피하려는 것으로 영 제144조의5제3항에 준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이 그 집행을 기피하려는 것으로 영 제144조의5제3항에 준하는 경우

3. 소관부서장이 회신한 집행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타당한 경우(제1항에 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
----- 제58조제2항-----
-----<단서
삭제>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4조(보정요구) 보정요구 대상,

- 준용 조문 변경
- 기존 제3항 후단→ 개정 제3항

- 보정요구 신설

<신 설>

제84조(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서에 따라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절차 및 기간 등은 제66조를 준용한다.

제85조(신청의 취하 및 반려) 취하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의 반려 등은 제67조를 준용한다. 이때 “제64조”는 “제82조”, “제54조 제1항”은 “제54조제3항”으로 본다.

제86조(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에 따라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 취하 및 반려 절차 신설

· 서식 번호 및 명칭 정정

· 서식 번호 및 명칭 정정

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회보서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즉시 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

<신 설>

제85조(검토 및 시정요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따라 3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삭 제>

· 기존 제84조제2항 후단→개정 제89조 제1항

· 기존 제85조제1항→개정 제86조 제3항

· 기존 제85조제1항→개정 제86조 제3항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즉시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 기존 제85조제2항→개정 제89조 제3항 및 제4항

· 기존 제85조제3항→개정 제89조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88조(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사유, 기간 및 처리절차 등은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때 “제64조”는

제6항

· 기존 제85조제4항→개정 제89조제5항

· 일반행정 권리보호요청도 심의 일시 중지 요청 허용

<신 설>

<신 설>

<신 설>

“제82조”, “제69조”는 “제87조”로 본다.

제2관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제89조(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 ①

소관부서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제8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 업무절차에 맞춰 ‘관’ 구성
- 기존 제84조제2항 후단 내용 별도 조문으로 신설

- 후속조치 명확화

<신 설>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이 제54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

· 기존 제85조제2항→개정 제89조 제3항

· 서식 번호 변경

· 기존 제85조제2항 후단→개정 제89조제4항

· 서식 번호 변경

· 시정요구 수용 기간 연장

<신 설>

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제91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기존 제85조제4항→개정 제89조 제5항
- 서식 번호 변경

<신 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

- 기존 제85조제3항과 기존 81조 제2항 조문 통합
- 서식 번호 변경

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하 “심의제외결정”이라 한다)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결정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직권시정, 과태료 납부 등으로 심의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3. 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제86조(시정명령 요청) ①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제85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1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4.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경우

5. 제66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제90조(시정명령 요청) ① -----
 ----- 제89조제3항-----

 ----- 별지 제49호서식-----

 ----- 요
청할 수 있다. -----

- 준용 조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별지 제49호서식-----

----- 3
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

-----.

③ ----- 별지 제50호서식-----

----- 별지 제35호서식-----

- 서식 번호 변경
- 시정명령 처리기간 연장

- 서식 번호 변경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설>

---. ----- 별지 제50호서식 ---

-----.

④ -----

--- 별지 제51호서식 ---

-----.

-----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1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

- 서식 번호 변경
- 시정명령에 후속절차 명확화

· 준용규정 명시

	<p><u>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 심의자료 배부 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제72조를 준용한다.</u></p>	
<p><신 설></p>	<p><u>제92조(의견진술 안내) 권리보호요청인, 소관부서장 대상 의견진술 안내 절차는 제73조를 준용한다.</u></p>	<p>· 준용규정 명시</p>
<p><신 설></p>	<p><u>제93조(의결 및 결정)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절차, 결정 유형 등에 대해서는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때 제“58조제1항”은 “제5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u></p>	<p>· 준용규정 명시</p>
<p><신 설></p>	<p><u>제94조(결과통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75조를 준용한다.</u></p>	<p>· 준용규정 명시</p>
<p><신 설></p>	<p><u>제95조(시정 조치) 소관부서장의</u></p>	<p>· 준용규정 명시</p>

제87조(사후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에서 제54조제3항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행위가 제54조제3항제4호에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제76조를 준용한다.

제96조(사후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행위가 제5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침해 사실확인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 서식 번호 변경
- 기존 제2항→개정 제1항

- 기존 제3항→개정 제2항

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권리침해 사실확인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에게 보안문서로 통보하고 담당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관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감사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관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 처리 과정에서 제54조제3항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7조(심의사례 활용) 납세자보호

- 기존 제1항→개정 제3항
- 서식 번호 변경

· 준용규정 명시

제6장의2 과태료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제88조(내용 파악 및 처리방향 결

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
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그 내
용을 파악하여 접수 다음 날까지
보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
의 요구, 심의제외 등 처리방향을
처분 담당부서에 통지한다.

제89조(권리보호요청 기간) 과태료

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관장
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위원회 심의사례 활용에 대해서
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 개정 제57조 후단으로 조문이동

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한다.

제90조(처리기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의 사실관계 확인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91조(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준용 규정) 이 장에 규정된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관세청 및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17조, 제64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 개정 제58조제3항으로 조문이동

제92조 (생략)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93조 ~ 제95조 (생략)

제8장 관세조사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제1절 관세조사 모니터링

제96조(모니터링 대상 업체 통보)

①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조사 착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자(이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관세

제63조 (현행 제92조와 같음)

(현행과 같음)

제98조 ~ 제100조 (현행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와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01조(모니터링 대상 업체 통보)

① -----
----- 별지 제54호
서식-----

-----.

② -----

· 기존 제92조→개정 제63조

· 조문 번호 수정

· 조문 번호 수정

· 조문 및 서식 번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관
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자(이하 “사
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7조(모니터링 실시) ①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제96조제1항에 따
른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
한 조사기간을 착수·진행·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별지 제50호서
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
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별지 제54호서식 -----

제102조(모니터링 실시) ① -----
----- 제101조제1항 -----

----- 별지 제55호서식
의 실시간 -----

② (현행과 같음)

- 조문 및 서식 번호 변경
- 준용 조문 변경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6조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해 관세조사 과정상 불만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무작위 선별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모니터링(이하 “현장 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③ ----- 제101조
제2항-----
----- 별지 제56호서식-----

-----.

④ -----

----- 별지 제56호서식-----

-----.

⑤·⑥ (현행과 같음)

- 준용 조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제98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제103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① -----

 -- 별지 제43호서식-----

 -----.

② -----

 ----- 별
지 제43호서식-----

· 조문 및 서식 번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수 있다.

1. ~ 3. (생략)

제99조(준용 규정) 제98조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하여 제17조, 제65조, 제67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0조(사후관리) 조사국(과)장은
제97조제6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을 이용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
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해야 한다.

제2절 제도개선

제101조(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
④ (생략)
⑤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은 제4항에 해당하는 발굴된 제

-----.

1. ~ 3. (현행과 같음)

제104조(준용 규정) 제103조-----

-- 제55조, 제68조부터 제79조--
-----.

제105조(사후관리) 관세조사 소관
국(과)장은 제102조제6항-----

-----.

(현행과 같음)

제106조(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조문 번호 및 준용 조문 변경

· 사후관리 주체 명확하게 표현
· 조문 번호 및 준용 조문 변경

· 조문 번호 변경

· 서식 번호 변경

도개선 과제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도개선 과제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생략)

제102조(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 납세자보호관은 제101조에 따라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주무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거나 주무국실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03조(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① ~ ⑤ (생략)

⑥ 납세자보호관은 제101조제1항

----- 별지 제57호서식-----

⑥ (현행과 같음)

제107조(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 ----- 제106조-----

제108조(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106조제1항

· 준용 조문 변경

· 조문 번호 변경

· 준용 조문 변경

및 제2항에 따른 제도 및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관국에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제102조 및 제103조제4항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소관국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과제별 제도개선 진행상황 및 추진일정을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9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제107조 및 제108조제4항-----

· 조문 번호 및 준용 조문 변경

제9장 보칙

제105조(점검) ① (생략)

(현행과 같음)

제110조(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조문 번호 변경

제10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제11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 재검토 기한 수정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 식 목 록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조문	페이지
1	위촉장	제11조	52
2	서약서	제12조	53
3	직무윤리(제척·회피) 사전진단서	제13조	54
4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	제13조	55
5	고충민원 신청서	제17·25·34조	56
6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 통지서	제20조	58
7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	제29조	59
8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제30조·제31조	60
9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	제30조·제31조	61
10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	제32·68·85·87조	62
11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	제68·85조	63
12	처분자료 열람·제출 요구서	제33조	64
13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	제35·76·85·86조	65
14	고충민원 심의자료	제37조	66
15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	제37·70조	67
16	고충민원 의결서	제39조	68
17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	제39조	69
18	고충민원 조치결과 통보서	제39조	70
19	고충민원 결정 요청서	제40조	71
20	고충민원 결정서	제40·45조	72
21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서	제41조	73
22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	제43조	74
23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서	제44조	75
24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	제45조	76

현 행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조문	비고
25	관세조사 일시중지 통지(통보)서	제46조	
26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	제47조	
27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자료	제49조	
28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	제50조	
29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	제51조	
30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제55·58·60·63·77조	
31	권리보호 요청서	제55·58·60·63·80·81조	
32	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서	제65조	
33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	제66조	
34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	제67·84조	
35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	제67·84조	
36	권리보호 심의요청 결과 통지서	제67·68조	
37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	제70조·100조	
38	의결보고서	제70조	
39	권리침해 사실확인서	제75조	
40	조사팀 교체 신청서	제76조	
41	시정명령 요청서	제76·86조	
42	시정명령서	제76·86조	
43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	제76·86조	
44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지서	제76조	

개 정 안

서식번호	서 식 명
28	관세조사 일시중지 통지(통보)서
29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
30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자료
31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
32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
33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서
34	권리보호 요청서
35	(신설)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
36	(신설) 권리보호요청 취하서
37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
38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
39	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서
40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
41	(신설)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
42	(신설)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
43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
44	(신설) 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
45	권리보호요청 의결서
46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
47	권리침해 사실확인서

위촉장

(인적사항)

귀하를 관세청(○○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관세청장(○○세관장)

현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함과 동시에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직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2.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인 등이 접촉을 시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에 통보 하겠습니다.
3. 본인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5.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세관장(관세청장) 귀하

개정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함과 동시에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직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2.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인 등이 접촉을 시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에 통보 하겠습니다.
3. 본인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5.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세관장(관세청장) 귀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제13조(운영)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에 따라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 상기 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중 아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합니다.

- 직무대행 지명순서 : 20 . . . 자로 시행

순서	성명	생년	구분	순서	성명	생년	구분
1				8			
2				9			
3				10			
4				11			
5				12			
6				13			
7				14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자가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1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제6항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1-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함 1-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음 1-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음
2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제7항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2-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음 2-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함 2-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힘 2-5. 뒷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3-1.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한 적이 있음 3-2.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음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제척·회피)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허가·면허·특허·결정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 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6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예 ()	아니오 ()
7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다. 또는 해당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0000년 제00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회피 사전진단서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 당사자

안건	조사대상자(신청인)	
연번	상호	성명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제척·회피 사유

연번	진 단 내 용
1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처분 등을 받는 사람(이하 "조사대상자")인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 처분 등에 대하여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사람인 경우
2	1번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1번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했던 경우
6	4번 또는 5번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의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 처분 등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앞면】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민 원 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주소
관련 분야	<input type="checkbox"/> 통관 <input type="checkbox"/> 심사 <input type="checkbox"/> 조사 <input type="checkbox"/> FTA <input type="checkbox"/> 일반행정	
고 충 내 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환급청구시 계좌번호		
첨부서류	1. 2.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세관장 귀하		
주의사항 1) 이면에 표시된 개인정보 관련 동의여부를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면에 있는 대리인 위임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 또는 대리인 표시란에 자필로 서명한 경우 날인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뒷면】

본인의 고충처리와 관련한 동의사항

본인은 세관공무원이 이 사건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안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이용 목적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
- 수집 대상 개인정보 (본 서식 및 구비서류의 각 항목별 개인정보)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고충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위 입 장

【뒷면】

본인의 고충처리와 관련한 동의사항

본인은 세관공무원이 이 사건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안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이용 목적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
- 수집 대상 개인정보 (본 서식 및 구비서류의 각 항목별 개인정보)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고충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위 입 장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6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 귀하(귀중)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 통지

귀하(귀사)께서 20 . .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당초 처리기한	20 . . .	처리 예정기한	20 . . .	
기한연장사유	※ 내용을 민원인이 알기 쉽게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끝.

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 주소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앞면】

본인의 고충처리와 관련한 동의사항

본인은 세관공무원이 이 사건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 【수집 대상 개인정보】 본 서식 및 구비서류의 각 항목별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5년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동의사항

1. 본인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관세법」 제118조의2 내지 5에 따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에 동의합니다,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20 고충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납세자보호제도 이용 동의서

1. 본인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관세법」 제118조의2 내지 5에 따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에 동의합니다,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	※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할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 【납세자보호제도 고충민원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에서 30일 이내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20 고충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연락처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뒷면】

□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한 고충민원 처리절차 안내

고충민원이란

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안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납세자보호담당관

☑ 역할
납세자 권리보호
고충민원 해소



☑ 처리업무
위법·부당한 처분(납세고지 제외) 시정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시정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처리절차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충민원 접수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방향 검토

소관 부서 의견 조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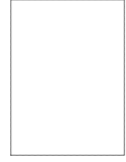
결과 통지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9호서식]

고충민원 취하서	
신청인	성 명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고충민원	신청일
취하 이유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 신청의 전부(일부)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유의사항 1) 대리인이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 또는 대리인 표시란에 자필로 서명한 경우 날인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취하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통지에 동의하신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위 임 장
「관세법」 제126조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의 고충 신청 취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_____ 인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 귀하(귀중)

(경유)

제 목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사)가 20 . . . 제출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 내용				

끝.

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 주소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8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소관부서장
(경유)

제 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민원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과(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20 . . .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고충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20 .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민 원 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고 충 내 용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1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소관부서장
(경유)

제 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민원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과(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20 . . .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고충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20 .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민 원 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고 충 내 용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붙임 : 고충신청서 사본 1부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9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

제 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

납세자보호(담당)관-0000호(20 . .)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

- 아 래 -

민 원 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주 무 과 의 견	고충요지			
	검토의견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 처분시 담당자 : 팀장(급·성명) / 담당(급·성명)				

붙임 :

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 주소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현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2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소관부서장
(경유)

제 목 처분자료 열람·제출 요구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귀 부서의 처분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민 원 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고충내용				
처분자료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기관장 직인

개정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소관부서장
(경유)

제 목 처분자료 열람·제출 요구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귀 부서의 처분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민 원 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고충내용			
처분자료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0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소관부서장
(경유)

제 목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납세자가 신청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귀 부서에서 시정(수용)함이

타당해 보여 시정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민 원 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내용				
시정요구 내용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 주소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현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1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

제 목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납세자보호(담당)관-0000호(20 . .)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민 원 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시정요구 내용				
조치결과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붙임:

개정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5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납세자보호(담당)관-0000호(20 . .)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민 원 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시정요구 내용			
조치결과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붙임: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서식]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원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고충요지	(요약)			
심의제외 사유				
납세자보호 (담당)관 심리내용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등 라. 심리의견 ※ 별지작성 가능			
첨부 : 1. 2.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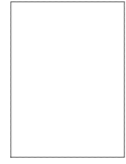
고충민원 심의자료					
민원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처분기관			해당부서		
고충 민원 대상	관세	부가세	기타내국세	가산세	청구세액 합계
	과세처분이 아닌 경우 처분내용				
회의 개최 경위	고충청구일	의견서접수	처리기한	회의 개최일	
고충 요지					
처분 내용					
소관과 의견					
심리 · 판단	가. 쟁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등 라. 사전열람 결과 마. 심리의견 ※ 별지작성 가능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7호서식]

고충민원 심의자료					
민원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성명 (상호)				
	전자우편 주소				
처분기관 · 해당부서					
고충 민원 대상	관세	부가세			
	과세처분이 아닌 경우 처분내용				
회의 개최 경위	고충청구일	의견서접수			
고충 요지					
처분 내용					
소관과 의견					
심리 · 판단	가. 쟁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등 라. 사전열람 결과 마. 심리의견 ※ 별지작성 가능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5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 귀하(귀중)

(경유)

제 목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

1. 20 . . . 제기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접수번호 :)과 관련하여 심의자료

사전열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및 대리인의 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이 확인되지 않아 안내문을 전송(FAX)으로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를 한 세관(납세자보호팀장) 또는 재결청에서 심의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해당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과 통지관서의 주장을 정리한 심의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로 제출할 의견이나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20 . . . 까지 아래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세관 △△과 관세행정관 □□□ (000-000-0000),

seoultaxadvocate@korea.kr

붙임 :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자료 1부. 끝.

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 주소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6호서식]

고충민원 의결서				
(접수번호 :)		(의결번호 :)		
민 원 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고충 내용				
의결 내용	인용(일부인용), 인용 불가			
의결 내용	※ 별지작성 가능			
<p>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인)</p>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9호서식]

고충민원 의결서				
(접수번호 :)		(의결번호 :)		
민 원 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고충 내용				
의결 내용	인용(일부인용), 인용 불가			
의결 내용	※ 별지작성 가능			
<p>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p>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7호서식]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20

수 신 : ○ ○ 세관장

아래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1. 인적사항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2. 담당부서

3. 고충내용

4. 의결내용

첨부 : 고충민원 의결서

현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8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조치결과 통보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민 원 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고충내용				
처리내용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붙임:

개정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1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조치결과 통보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민 원 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고충내용			
처리내용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붙임: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9호서식]

고충민원 결정 요청서

문서번호 :		담당	팀장	담당관	세관장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제 목 : 고충민원 결정 요청					
민 원 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고충 요지					
처분 내용					
소관 부서장 의견					
위원회 의결 사항	가. 쟁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등 라. 의결내용 ※ 별지작성 가능				
년 월 일 ○ ○ 세관장 (인)					
첨부 : 1. 고충민원 의결서 2.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0호서식]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3호서식]

고충민원 결정서

고충민원 결정서

문서번호 :				장	
수 신 : ○○세관장					
제 목 : 고충민원 결정					
민원인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관관서 (소관과·국)					
<p>위 민원인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20 . . .에 ○○세관장으로부터 결정 요청이 있었으므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p> <p>주문 :</p> <p>이유 : 불임과 같습니다.</p>					

문서번호 :			
수 신 : ○○세관장			
제 목 : 고충민원 결정			
결정요청 내용	관할 세관관서 (소관과·국)		
위원회 의결사항			
소관부서장 의견			
<p>위 고충민원 결정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p> <p>주문 :</p> <p>이유 : 불임과 같습니다.</p>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1호서식]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조 사 관 리 번 호	신 청 조 사 반		
당 초 조 사 유 형	통관적법성 분야 (품목)		

당 초 조 사 범 위

조 사 확 대 범 위

조 사 범 위 확 대 사 유	<p><확대사유> - 근거 : 법령 조항 및 조문 등 기재 - 사유 : 법령 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p> <p>* 필요시 별지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p>
--------------------	---

상기 납세자에 대한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장 (국장) : (서명 또는 인)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2호서식]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리자료				
납 세 자	접 수 번 호		조사관	소 속
	조사관리번호			성 명
	통관적법성 분야 (품목)		조 사 기 간	
당 초 조 사 범 위				
관 세 조 사 확대 범 위				
확대 사유				
심의· 판단	가. 확대의 적법성 나. 관련법령 다. 심리의견 ※ 별지작성 가능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5호서식]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				
납 세 자	접 수 번 호			
	조사관리번호			
	통관적법성 분야 (품목)			
당 초 조 사 범 위				
관 세 조 사 확대 범 위				
확대 사유				
심의· 판단	가. 확대의 적법성 나. 관련법령 다. 심리의견 ※ 별지작성 가능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3호서식]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서

기본사항	접 수 번 호		의 결 번 호		
	조 사 관 리 번 호		조 사 반	소 속	
	통관적법성 분야 (품목)			성 명	
근거법령	- 법령 조항 및 조문 등 기재 ※ 별지작성 가능				
확대사유	- 법령 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별지작성 가능				
의결내용	승인, 승인불가				
의결이유 (확대 제한사유)	※ 별지작성 가능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4호서식]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				
문서번호 :		담당	팀장	담당관
수 신 : 주무국(과)장				
참 조 :				
제 목 : 조사범위 확대 승인(제한) 통보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조 사 반				
당 초 조 사 범 위		통관적법성 (품목)	조사 유형	
조사범위 확대사유 (확대 제한사유)	근거법령			
	사유 (법령 외)			
확대 조사범위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7호서식]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주무국(과)장				
참 조 :				
제 목 : 조사범위 확대 승인(제한) 통보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전자우편 주소			
조 사 반				
당 초 조 사 범 위				
조사범위 확대사유 (확대 제한사유)	근거법령			
	사유 (법령 외)			
확대 조사범위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5호서식]

관세조사 일시중지 통지(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주무국(과)장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통 지 내 용

조 사 대 상 분 야	
조 사 대 상 기 간	
당 초 또는 연장된 조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를 중지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된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 사 중 지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관세조사 일시 중지를 통지(통보)하며 위 조사중지 기간 동안은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조사중지기간이 종료되면 당초 조사기간의 잔여 조사일수 만큼 계속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합니다.

년 월 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6호서식]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 청 조 사 반				
반 환 요 청 일			조사 유형	
보 관 기 간 연 장 사 유		<보관기간 연장사유> - 사유 : - 반환요청한 일시보관 장부 등 내용 : ※ 별지작성 가능		
연장받고자 하는 보관기간 (14일 범위 이내)				
상기 납세자에 대한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장부 등 보관기간을 연장 하고 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장 (국장) :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9호서식]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담당관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전자우편 주소			
신 청 조 사 반				
반 환 요 청 일				
보 관 기 간 연 장 사 유		<보관기간 연장사유> - 사유 : - 반환요청한 일시보관 장부 등 내용 : ※ 별지작성 가능		
연장받고자 하는 보관기간 (14일 범위 이내)				
상기 납세자에 대한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장부 등 보관기간을 연장 하고 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장 (국장) :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7호서식]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자료					
			담당	팀장	담당관
기 본 사 항	접 수 번 호		조 사 반	소 속	
	조 사 관 리 번 호			성 명	
	통관적법성분야		조 사 대 상 기 간		
당초 보관기간			반환 요청일		
연장신청 보관기간					
보관 기간 연장 사유					
심의 · 판단	가. 보관기간 연장의 필요성 나. 관련 법령 등 다. 심리의견 ※별지작성 가능				
첨부 : 1. 2.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8호서식]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				
기본 사항	접 수 번 호		의 결 번 호	
	조사관리번호		조 사 반	소 속
	조 사 세 목		성 명	
연장 사유				
의결 내용	승인, 승인불가			
의결 이유	※ 별지작성 가능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1호서식]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				
기본 사항	접 수 번 호			
	조사관리번호			
	조 사 세 목			
연장 사유				
의결 내용	승인, 승인불가			
의결 이유	※ 별지작성 가능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 본부 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9호서식]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					
문서번호 :		담당	팀장	담당관	장
수 신 : 주무국(과)장					
참 조 :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조 사 반					
반 환 요 청 일		조사 유형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사유 (연장 제한사유)					
연장된 보관기간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하였음(보관기간 연장을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					
이 통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 ○ (전화: 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0호서식]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납세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주소			
요청대상	<input type="checkbox"/> 관세조사 /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조사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기간		
심의 요청 사항	본부세관장	<input type="checkbox"/>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 중지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일시) 중지			
	관세청장	<input type="checkbox"/> 관세조사 중 관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 중지			
		<input type="checkbox"/> 관세조사 범위 확대에 대하여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부세관장이 결정한 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본부세관 심의요청일			
		본부세관 결정통지 받은 날			
권리보호 요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개정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서

접수번호					
납세자	성 명 (상 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요청대상	<input type="checkbox"/> 관세조사 /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조사				
심의 요청 사항	본부세관장	<input type="checkbox"/>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 중지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일시) 중지			
	관세청장	<input type="checkbox"/> 관세조사 중 관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 중지			
		<input type="checkbox"/> 관세조사 범위 확대에 대하여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부세관장이 결정한 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본부세관 심의요청일			
		본부세관 결정통지 받은 날			
권리보호 요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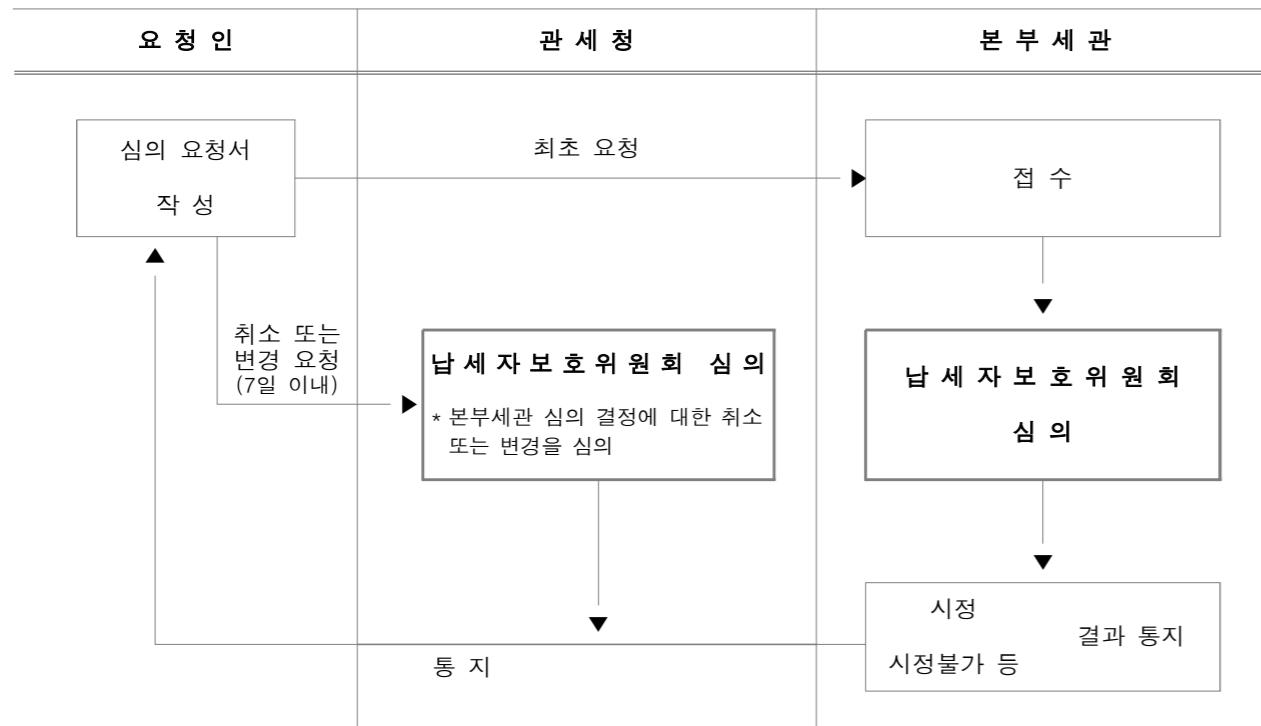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납세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와 관련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권리보호 심의 요청 대상이 관세조사와 원산지조사를 기재하고, 조사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3. 심의 요청 사항
 - (본부세관장) 「관세법」 제11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세관장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임을 표시합니다.
 - (관세청장) 「관세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에 관한 사항인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사항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합니다.
 - (본부세관 심의요청일) 본부세관에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을 기재합니다.
 - (본부세관 결정통지 받은 날) 본부세관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본부세관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현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1호서식]

권리보호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Table with fields for applicant information: Name (법인명/대표자), Business Registration No., Birth Date, Address, Phone No., and Email No.

권리보호 대상 (권리보호 요청분야)
 통관 심사 조사 FTA 일반행정

권리보호 요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권리보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서류 :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작성자)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이용 목적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
○ 수집 대상 개인정보 (본 서식 및 구비서류의 각 항목별 개인정보)
○ 보유·이용 기간 (5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또한, 동법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정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4호서식]

【앞면】

권리보호 요청서

접수번호

Table with fields for applicant information: Name (법인명/대표자), Business Registration No., Address, Phone No., and Email No. Includes a checkbox for electronic consent: 전자우편 결과통지 동의 비동의

권리보호 대상 (권리보호 요청분야)
 통관 심사 조사 FTA 일반행정

권리보호 요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할 수 있음

「관세법」 제1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신설〉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5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 귀하(귀중)
(경유)

제 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사)가 20 . . .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요청인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장)	
권리보호 요청내용		
처리 내용		

끝.

〈신설〉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4호서식]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				
아래 납세자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권리보호 요청이 제기되어 귀국(과,세관)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권리보호 요청내용				
필요한 자료명세		※ 관세조사의 경우에 ①조사대상분야, ②조사대상기간, ③조사기간, ④조사사유, ⑤기 타의 내용과 관련 서류를 제출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7호서식]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				
아래 납세자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이 제기되어 귀국(과,세관)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권리보호 요청내용				
필요한 자료명세		※ 관세조사의 경우에 ①조사대상분야, ②조사대상기간, ③조사기간, ④조사사유, ⑤기 타의 내용과 관련 서류를 제출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5호서식]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

아래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우리과(세관)의 의견과 자료를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 화 번 호

권리보호
요청내용

소관과
(세관)
의 건

※ 관세조사의 경우에 제출할 자료를 포함합니다.

※담당자 : 팀장(급·성명) / 담당(급·성명·전화번호) / 담당(급·성명·전화번호)

첨부 : 1.
2.

년 월 일
○○ 과장 (인)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2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소관부서장
(경유)

제 목 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

1. 귀 부서에서 진행 중인 관세조사에 대하여 납세자 권리침해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세조사를 일시중지를 요청합니다.
2. 위 조사중지 기간 동안은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없고 조사중지기간이 종료되면 당초 조사기간의 잔여 조사일수 만큼 계속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합니다.

- 아 래 -

조 사 대상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조사반			조사 유형	
관세조사 일시중지 사유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관세조사 중지기간	부터		까지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9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소관부서장
(경유)

제 목 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

1. 귀 부서에서 진행 중인 관세조사에 대하여 납세자 권리침해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세조사를 일시중지를 요청합니다.
2. 위 조사중지 기간 동안은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없고 조사중지기간이 종료되면 당초 조사기간의 잔여 조사일수 만큼 계속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합니다.

- 아 래 -

조 사 대상자	상 호 (법 인 명)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조사기간			
조사반			
관세조사 일시중지 사유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관세조사 중지기간	부터		까지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1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소관부서장
(경유)

제 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납세자 등이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귀 부서에서 시정(수용)함이 타당해 보여
시정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요청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권리보호 요청내용			
시정요구 내용	※필요시 붙임으로 작성 가능		

〈신설〉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7호서식]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			
결과통지 받은 날		소관부서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세 목	
	성 명 (대 표 자)	조사대상기간	
	주 소 (사 업 장)	대 리 인	
당초 결정 내용	주 문		
	이 유		
쟁 점			
1. 사실관계 2. 권리보호 요청내용 3. 소관부서장 의견 4. 법령·판례·예규 등 5. 검토 의견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3호서식]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			
연번	안건 유형	접수번호	
<i>작성 예</i>			
1	고충민원 관세조사 권리보호 일반행정 권리보호 관세조사범위 확대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중 선택 기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사건번호 기재	
위 안건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으로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설〉

현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8호서식]

의결보고서				
납세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본부세관 심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관할 세관관서 (소관과·국)	
심의유형				
위 원 회 심의결과				
<p>상기인이 20 . . . 에 권리보호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p> <p>주 문 : 이 유 : 불임과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세관장(관세청장) 귀하</p>				

개정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5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의결서				
(접수번호 :)				
민원인	상 호 (법 인 명)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본부세관 심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권리 보호 요청 내용				
결정 내용	시정(일부), 시정불가			
의결 내용	※ 별지작성 가능			
<p>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p>				

현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권리보호 심의요청 결과 통지

귀하(귀사)가 20 . . . 요청한 권리보호 심의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제118조의5제2항 및 제4항)

- 아 래 -

납세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권리보호 요청사유				
처리결과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는 「관세법」 제1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의5에 따라 본부세관장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9호서식]

권리침해 사실확인서				
아래와 같이 세관공무원의 납세자 권리침해 사실을 통보하오니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권리침해 사실확인 경 위				
납 세 자 권리침해 행 위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7호서식]

권리침해 사실확인서				
아래와 같이 세관공무원의 납세자 권리침해 사실을 통보하오니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권리침해 사실확인 경 위				
납 세 자 권리침해 행 위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조사팀 교체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e-mail 주소			
조사팀(현재)		조사 종료일		
조사팀 교체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조사팀 교체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div>				
※ 조사팀 교체 신청으로 인해 관세조사 일정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조사부서의 사정에 따라 특정 조사 직원만 교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1호서식]

시 정 명 령 요 청 서				
문서번호 :		담당	팀장	담당관
		수 신 :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 목 : 시정명령 요청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권리보호 요청내용				
시정요구 내 용				
주무국 (과)장 의견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9호서식]

시 정 명 령 요 청 서			
문서번호 :		담당	
		수 신 :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 목 : 시정명령 요청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시정명령 대상			
권리보호 요청내용			
시정요구 내 용			
주무국 (과)장 의견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2호서식]

시 정 명 령 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시정명령	담당	팀장	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 결과 귀국(과)에서 아래와 같이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하여 시정을 명령하니 즉시 시정 명령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권리보호 요청내용	
납 세 자 권리침해 행 위	
시정명령 내 용	

년 월 일
납세자보호관 (인)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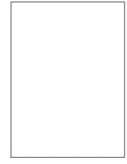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담당	계장	과장	국장
수 신 :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참 조 :					
제 목 :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					
20 . . . 시정명령 요청서(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상 호 (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시정명령 요청내용					
시정명령 불가사유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51호서식]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참 조 :				
제 목 :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				
20 . . . 시정명령 요청서(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장)			
시정명령 요청내용				
시정명령 불가사유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4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 귀하(귀중)
(경유)

제 목 조사팀 교체 신청 처리결과 통지서

귀하(귀사)께서 20 . . . 신청한 '조사팀 교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상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 소)	
신청 당시 조사팀		
조사팀 교체 신청 사유		
처리 결과		

끝.

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 주소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5호서식]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				
문서번호 :				
수 신 : 소관부서장				
제 목 : 집행 일시중지 요청				
아래 관세행정 집행 절차에 납세자 권리침해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집행을 일시중지 요청합니다.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담당자		집행 일시 중지 조사 대상 기간		
업무분야		집행 중지 대상		
집행 일시중지 사유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53호서식]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			
문서번호 :			
수 신 : 소관부서장			
제 목 : 집행 일시중지 요청			
아래 관세행정 집행 절차에 납세자 권리침해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집행을 일시중지 요청합니다.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담당자		집행 일시 중지 조사 대상 기간	
업무분야		집행 중지 대상	
집행 일시중지 사유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9호서식]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조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일련 번호	조사반장		상호	직위	성명	연락처	조사 유형	조사 기간	모니터링 유형	통화일	체크 리스트 회수여부
	직급	성명									

비 고

· 서식 번호 변경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50호서식]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조사공무원(조사팀장) 성명 :	
		조사개시일 :	년 월 일
구분	관세조사절차 적법 준수 여부 및 청렴성 유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답변	
		예	아니오
1	관세조사 사전 통지는 조사 개시 15일전까지 받았습니까?		
2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까?		
3	조사공무원이 납세자권리보호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까?		
4	조사연기·조사장소 변경·조사유예 신청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까?		
5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습니까?		
6	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받았습니까?		
7	조사공무원은 조사진행 절차와 진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까?		
8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구하였습니까?		
9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해명기회가 귀하에게 제공되었습니까?		
10	당초 통지된 조사범위(분야, 조사대상 기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조사범위 확대 시 :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통지를 받았습니까?)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55호서식]

실시간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구분	관세조사절차 적법 준수 여부 및 청렴성 유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1	관세조사 사전 통지는 조사 개시 15일전까지 받았습니까?
2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까?
3	조사공무원이 납세자권리보호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까?
4	조사연기·조사장소 변경·조사유예 신청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까?
5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습니까?
6	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받았습니까?
7	조사공무원은 조사진행 절차와 진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까?
8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구하였습니까?
9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해명기회가 귀하에게 제공되었습니까?
10	당초 통지된 조사범위(분야, 조사대상 기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조사범위 확대 시 :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통지를 받았습니까?)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51호서식]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조사공무원(조사팀장) 성명 : _____ 조사개시일 : 년 월 일
-------------------	---

* 익명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조사공무원 성명과 조사개시일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설문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정도를 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1	귀하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점)
1-2	조사기간은 당초 통지된 조사기간 내에 종료되었습니까?	(점)
1-3	조사공무원은 사전통지된 조사범위, 조사기간과 적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였다.	(점)
1-4	조사공무원은 조사진행 절차와 진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점)
1-5	조사공무원은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해명기회를 제공하였다.	(점)
1-6	조사종료 후 과세내용(과세항목, 과세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점)
1-7	조사공무원은 쟁점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점)
1-8	조사공무원의 자료요구가 무리함이 없었고 해명에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하였다.	(점)
1-9	서류, 증명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구하였습니까?	(점)
1-10	조사종료 후 후속절차와 불복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점)
1-11	조사공무원은 친절하였습니까?	(점)
2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및 조사 종료 후 사적인 만남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점)
3	조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조사 진행 ② 조사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③ 조사과정에서의 업무처리 지연 ④ 조사결과 통보의 지연 ⑤ 조사공무원의 불친절 ⑥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⑦ 조사업무를 상담할 직원의 부족 ⑧ 조사 중 직원 교체시 인계인수의 미흡 ⑨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관리 부실 ⑩ 기타() ⑪ 해당 없음	

현 행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6호서식]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	
관서	
제목	
관련법령 및 제도	
제도개선 과제 출처	<input type="checkbox"/> 민원(유형 : 접수번호 :)
	<input type="checkbox"/> 수집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건의
민원 발생원인	
개선방안	

개 정 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57호서식]

제도개선 과제보고서	
관서	
제목	
관련법령 및 제도	
제도개선 과제 출처	<input type="checkbox"/> 민원(유형 : 접수번호 :)
	<input type="checkbox"/> 수집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건의
민원 발생원인	
개선방안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8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 통지**

○○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활동 과정에서 귀하(귀사)의 권리를 침해한 관세공무원의 행위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권리침해 내용		
처리 내용		

끝.

기관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